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43
----------	-----

2017. 1. 17.(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- 나. 제출일자: 2017년 1월 6일
- 다. 회부일자: 2017년 1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2017년 1월 17일
(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감사관 유수남)

가. 제안이유

-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보완과, 내부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과 동일한 용어(공익신고)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본 조례의 제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- 2) 신고 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 포함(안 제2조)
- 3)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)
- 4)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관(감사부서의 장) 지정 (안 제5조의2)
- 5)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 보호 규정 (안 제7조제4항,안 제7조의2)
- 6) 보상심의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파 회피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규정 및 위촉 해제 규정 신설(안 제12조, 제12조의2)
- 7)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동일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이며,
-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 보호 규정,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,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익신고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사립학교 교직원”을 “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

제2조제2호 중 “공익신고”란을 “부조리신고”(이하 “신고” 라고 한다.)란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공익신고 기한)”을 “(신고 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

중 “공익신고”를 “신고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공익신고 방법 등)”을 “(신고의 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익신고”을 “신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부조리신고책임관의 지정)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

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, 신고의 상담 및 접수, 처리,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1항 중 “교육감은 공익신고”을 “책임관은 신고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신고자의 보호)”를 “(신고자의 보호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교육감은 신고자의 공익신고”를 “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”로, “공익신고”를 “신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

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책임의 감면 등)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

③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공익신고”를 “부조리신고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해당 사안”으로 하고, 같은

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, 수사,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”를 “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,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,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3.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4조의 제목“(보상금의 신청)”을“(보상금의 신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서식에 따라”를 “서식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 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
2.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
3.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

제15조제1항 중 “위원회는 공인신고자의 신청에 따라”를 “교육감은 보상금의

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”로, “별지 제3호”를 “별지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위원회의”를 삭제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익신고”를 “신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외부기관”을 “내부 및 외부기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및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<u>공익신고자</u>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공무원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를 말한다.</p> <p>가.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 <u>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</u></p> <p>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에 따른 <u>사립 학교 교직원</u></p> <p>다. <u>< 신 설 ></u></p>	<p><u>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사람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사람을 ----- 가. ----- ----- <u>공무원</u></p> <p>나. ----- ----- <u>사립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</u> 다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른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"공익신고"</u>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조(<u>공익신고 기한</u>)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<u>공익신고</u>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5조(<u>공익신고 방법 등</u>) ① <u>공익 신고</u>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방문·우편·팩스·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교육공무직원</u></p> <p>2. <u>"부조리신고"</u>(이하 "신고" 라고 한다.)란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<u>신고 기한</u>) ----- ----- <u>신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<u>신고의 방법 등</u>) ① <u>신고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단,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신고사항의 처리) ① <u>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<u>신고자의 보호</u>) ① <u>교육감은 신고자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5조의2(부조리신고책임관의 지정)</u></p> <p>① <u>교육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(이하 "책임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, 신고의 상담 및 접수, 처리,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③ <u>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제6조(신고사항의 처리) ① <u>책임관은 신고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신고자의 보호 등</u>) ① <u>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 -----</u> ----- <u>신고-----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<u>해촉</u>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8조(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<신 설></u>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위촉 해제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의2(책임의 감면 등)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(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<신설></p> <p>④ <신설></p> <p>② (⑤항으로 변경)</p> <p>제9조(보상심의위원회) ① <u>공익신고</u>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u>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②항과 같음)</p> <p>제9조(보상심의위원회) ① <u>부조리신고</u> ----- ----- <u>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</u> <u>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한 차례만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위원회의 심의</u>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<u>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</u></p> <p>3. <신 설></p> <p>4. <신 설></p> <p>② <u>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----- ----- <u>해당 사안</u>----- -----</p> <p>1. <u>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, 수사,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</u></p> <p>② <u>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-----</u> ----- ----- <u>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,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있으며,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14조(보상금의 신청)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신설></p>	<p>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,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.</p> <p>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.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<p>제14조(보상금의 신청 등) ①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<신 설></p> <p>제15조(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) ① <u>위원회는 공인신고자의 신청에 따라</u>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,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<u>별지 제3호 서식</u>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상금은 <u>위원회의</u>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<u>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</u> <u>2.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</u> <u>3.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</u> <p>제15조(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) ① <u>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4호</u> ----- ----- ② ----- <u>위원회의</u> ----- ----- 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6조(보상금의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공익신고</u>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외부기관에서</u> 수사·조사·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보상금의 지급 제외) ----- ----- <u>신고</u>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내부 및 외부기관에서</u> -----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신 고 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
① 신고자	성명	생년월일
	소속	직업(직위)
	주소	
	전화번호	예금계좌번호
② 신고 대상자	성명	직위(직급)
	소속	
③ 신고내용 (6하 원칙에 의거 기재)		
④ 증거서류	“증거 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”	
⑤ 비 고		

위와 같이 피신고자(신고대상)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충 청 북 도 교 육 감 귀하

보상금 결정 통지서

① 보상금 접수번호	
② 보상금 지급대상자	성명
	주소
③ 지급결정사항	결정일자 20 년 월 일
	결정내용
	지급액 금 원(금 원)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20 년 월 일

충청북도교육감